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직권 신청 근거 마련 등〉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18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검토의견	2
-----------------	---

1. 정부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직권 신청 근거 마련 ...	2
---	---

2. 보험료 지원 및 직권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	11
---	----

※ 참고자료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16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향엽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12.

3. 회부연월일 : 2026. 3.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에서도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의 부담 등으로 인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및 제12조의10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정부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직권 신청

근거 마련(안 제12조의7제3항 및 제4항 신설)

개정안은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료 지원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② (생략)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해당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 그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동의는 보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상·지원 수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직권 신청의 요건 및 동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현행법¹⁾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²⁾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³⁾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 도입됨. 제도 도입시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3년부터 전체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2024년에는 지원 비율을 기존 최대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함. 한편, 2024년에는 법률 개정⁴⁾을 통해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만,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아직까지 정부 지원은 없는 상황임⁵⁾.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법률에 따른 정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연계⁶⁾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환급이 가능한 구조임.

16개 광역지자체 고용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

순번	지자체 (협약순)	지원대상	지원비율 (7→1등급)	지원 기간	정부+지자체 합산 지원비율	자부담 비율	
						최대	최소
1	서울	전체 소상공인	20	5년	70~100	30	-
2	경기	1인 소상공인	20~30	5년	80~100	20	-
3	부산	전체 소상공인	15~30	5년	80~95	20	5
4	경남	1인 자영업자	20	3년	70~100	30	-
5	대전	1인 영세 자영업자	20~30	3년	80~100	20	-
6	광주	1인 자영업자	20	3년	70~100	30	-
7	울산	전체 소상공인	15~30	3년	80~95	20	5
8	강원	1인 자영업자	20~50	계속	100	-	-
9	대구	1인 소상공인	10~40	3년	90	10	10
10	충북	1인 소상공인	10	3년	60~90	40	10
11	경북	전체 소상공인	20~40	계속	90~100	10	-
12	세종	전체 소상공인	10	3년	60~90	40	10
13	전남	1인 소상공인	20	3년	70~100	30	-
14	인천	1인 소상공인	10	3년	60~90	40	10
15	전북	1인 자영업자	20	1년	70~100	30	-
16	제주	전체 소상공인	15~20	5년	70~95	30	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

-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125821호, 공포일자: 2024. 1. 9.)
- 5) 중소벤처기업부는 '25년·'26년 본예산에 세부사업 '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의 내역사업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을 신규로 편성하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 6)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충남도는 지원사업 미실시)와 사회안전망 강화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의 보험료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4년 11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⁷⁾하고 있음. 종전에는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동 서비스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고용보험료 지원 접근성이 제고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⁸⁾임.

동 지원 제도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⁹⁾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지원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¹⁰⁾되고 있음.

7)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 통합(원스톱) 서비스 시행”, 2024. 11. 29.

8) 2024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1인 또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674만 7,159명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는 5만 3,705명으로 가입률은 0.8%임. 또한 산재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1인 또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675만 974명 대비 산재보험 가입자는 4만 4,542명으로 가입률은 0.7%임.(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및 국가데이터처,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 결과’, 2025.10.23.)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①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 누락으로 인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행정적·절차적 부담을 경감하여 보험료 지원 수혜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직권 신청 요건 등에 관한 위임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 고시는 제·개정이 용이하여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 수준 및 절차, 직권 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특히 보험료 지원 대상·지원 수준 등은 수혜자의 급부 수준과 직결되는 실체적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제도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하는바,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

10) 박충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42호, 2025. 11. 5.

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면서, 지원 대상·수준·방법 및 절차 등 핵심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보험료 지원 관련 유사 입법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 규모 및 사업 운영 여건, 시스템 연계 방식 등에 따라 신속한 조정이 필요하므로 탄력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원 대상 및 직권 신청의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되,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은 고시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둘째,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지원 수혜 소상공인은 2018년 2,489명에서 2024년 3만 1,162명으로 약 12.5배 증가¹¹⁾하였으며, 2025년에는 4만 2,378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는 등¹²⁾ 수혜자 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의 직권 신청 도입으로 보험료 지원 대상이 추가로 확대¹³⁾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정안의 입법 취지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¹⁴⁾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11)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소상공인 연차보고서”, 2025. 8., pp.42-43.

12)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 2026. 4.

13) 한편, 현재 임의가입에 따른 자영업자의 저조한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보험 당 연가입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 발의(의안번호 제22174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제안일자: 2026. 3. 12.) 되었는바, 해당 법안 통과 시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14) 동 사업의 재원은 세부사업 ‘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의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25년 예산 14,827백만원은 전액 집행(집행률 100%) 하였으며, 26년 예산은 기지원자 23,200명 및 신규지원자 19,0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 대비 3.3% 증액한 15,312백만원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고용보험료 지원자(A)	2,489	5,547	10,145	14,679	18,012	24,884	31,162	42,378
②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B)	18,840	22,808	31,014	37,261	43,023	47,563	53,350	61,403
③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A/B)	13.2	24.3	32.7	39.4	41.9	52.3	58.4	69.0
④ 지원 예산 집행액	651	2,006	2,203	2,556	3,518	5,000	11,205	14,827

자료: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 재정리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서, 보험료 직권 신청 대상 소상공인의 요건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셋째, 직권 신청 도입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정부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조문은 '그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대리 신청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취지가 정부의 직권 신청임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검토¹⁵⁾할 필요가 있음.

15) <수정의견>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직권 신청에 관한 유사 입법례로는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관계 기관이 지원 제도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할 수 있음.

정부의 지원 제도 직권신청 관련 유사 입법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사·정보분석 등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려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소상공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보험료 지원 및 직권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안 제12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2조의10(보험료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권 신청의 실시 등을 위하여 소득자료·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이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u>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u><신설></u> ② (생략)	<u>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u>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u> ④ <u>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관리 절차 및 보안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9조(벌칙)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12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	---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및 직권 신청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소득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정보의 범위, 관리 절차 및 보안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 업무 및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¹⁶⁾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1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정 지원(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재난지원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 1) 상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종료일, 휴업 신고일
 - 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 1) 법인명,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 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종료일, 휴업 신고일
 -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 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
 -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
 -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
 -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
 - 마. 다음에 따라 전송·제출받은 정보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2.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의 지급 또는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의 주소로 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홍공단이 소상공인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공공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¹⁷⁾도 마련하고 있음. 이들 규정은 자료 요청의 목적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보험료 지원 및 직권 신청 실시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로 소득자료·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행 유사 규정 대비해 법률 명시 수준이 낮은 측면이 있음. 직권 신청은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가. 조치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나. 조치의 위반 여부, 내용, 위반 기간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

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 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른 대출자산의 회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점에서, 직권 신청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 신청 제도 도입 시 현행 신청주의 방식과
달리 행정청이 지원 대상을 직접 발굴·확인하는 절차를 선행하게 되므
로, 소상공인 해당 여부 및 지원 요건 확인에 필요한 범위 내¹⁸⁾에서
관계기관의 자료를 제공받거나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현재 보험료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
하여 과세정보를 별도로 요청받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
로 한 직권 신청의 경우에도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가 달
라질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관계기관 요청 자료에서 소득 및 국세자
료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

18) 중소기업부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자료로서 소득
자료·국세·건강보험 관련 자료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적자지속 등 불가피한 폐업 시 생활안정, 재기를 위한 직업능력개발비와 실업급여 지급

□ 사업기간 : '26. 1월 ~ '27. 2월('26년)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근거법령 조항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사업예산 : 15,312백만원('26년)

□ 지원규모 : 42,200명('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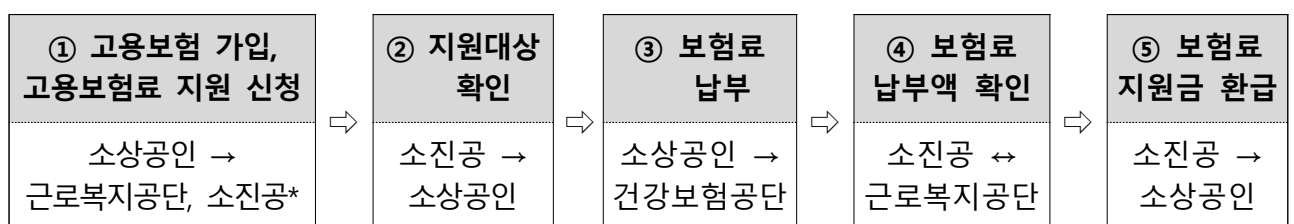
□ 지원방식 : 가입 등급별 납입 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보험가입 기준보수(등급)별 지원비율 및 금액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 지원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월 보수액(기준보수) :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고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3년마다)하고,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 지원절차



*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근복공) 또는 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소진공)